

경운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경운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미디어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내 언론 및 출판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과 올바른 비판정신을 함양하며 교내 구성원 간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기구 및 임원

제2조(기구 및 업무) 센터는 신문사, 방송국, 교지편집국의 3개 매체로 구성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문사
 - 가. 경운대신문의 발행
 - 나. 기타 위와 관련되는 사업 및 학술/문화 활동
2. 방송국
 - 가. 교내방송
 - 나. 기타 위와 관련되는 사업 및 학술/문화 활동
3. 교지편집국
 - 가. 교지 “경운문화”의 발간
 - 나. 기타 위와 관련되는 사업 및 학술/문화 활동

제3조(발행인) 총장은 각 매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신문, 교지 및 방송제작물의 발행인이 된다.

제4조(임원)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당연직 임원: 총장, 미디어센터장
2. 임명직 임원: 각 매체의 국장, 부국장, 부장

제5조(당연직 임원) ①미디어센터장(이하 '센터장'이라 한다)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신문, 교지 및 방송제작물의 편집인이 되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임명직 임원) 임명직 임원은 재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학생기자 및 학생국원) 신문사에는 학생기자, 방송국에는 학생국원, 교지편집국에는 학생편집위원을 둔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수혜 및 징계

제12조(장학금) 각 매체 구성원에게 본교의 「장학금지급규정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제13조(포상) 각 매체 구성원 중 학교 또는 각 매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징계) 각 매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배하거나 각 매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2. 방송제작물 및 발행물의 제작이나 편집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행위를 한 경우

3. 본교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경우

제5장 재정 및 기타

제15조(재정) 센터의 재원은 교비와 기타 보조금 및 사업 수익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으로 신문사운영규정, 방송국운영규정, 교지편집국운영규정은 폐지한다.